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규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수입증지판매인의 지정을 계약제로 변경함. (안제8조)
- 나. 판매인 지정신청시 신청서에 관계증빙서(인감계 및 위치도)첨부사항 폐지. (안제10조)
- 다. 판매인의 의무사항 중 증지판매 보유량 의무 폐지. (안제11조)
- 라. 판매인의 변동사항 신청서 제출 의무 삭제. (안제12조)
- 마. 판매인의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 요건 삭제. (안제14조)
- 바.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의무 삭제. (안제16조)
- 사. 장부비치 의무 또는 검사 조항 삭제. (안제28조)
- 아.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2호·제6호·제8호·제9호 서식은 삭제하고자 함.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입인지의 판매) 수입인지는 체신관서와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97. 12. 13 법5454, '99. 1.29)

제4조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①제3조에 규정된 판매기관외에 수입인지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9. 1. 29)

②판매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 1. 29)

③판매인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1.29)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4조에 수입인지 판매에 관하여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가 없음.

나. 내용타당성

-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인에 대한 의무규정 사항을 완화하여 판매인의 불만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규제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